# 설계우선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안)

정보기술계약과-2867, 2015. 4. 15.

**제1조(목적)** 이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우선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우선방식’이란 소프트웨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현사업을 이행하게 하는 발주방식을 말한다.
2. ‘설계산출물’이라 함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정의·설계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3. ‘설계사업자’라 함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정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설계 과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설계사업자가 납품한 설계산출물을 제14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 완료한 결과물을 말한다.
5. ‘구현사업자’라 함은 설계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설계 과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 및 오류 수정 등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 따라 요구사항별로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단, IT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은 수량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관하여는 조달청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을, 소프트웨어용역의 착수·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하자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설계사업자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한다.

②구현사업자의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한 문서와 설계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일반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정기·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설계사업자의 특별 책임)** 설계사업자는 설계서를 구현사업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고 구현사업자의 설계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설계사업자와 구현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상호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이행계획서
2. <서식 1>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구현사업자 각 구성원별 지분율과 계약금

액을 명시한 합의서

3. 산출내역서(단, 설계사업자는 설계산출물의 설계 오류, 누락 등을 수정·보완, 설계서를 구현사업자에게 인계·교육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분야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4.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구현사업자는 설계서 수령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착수신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제안서, 기술협상 과정에서 특정 기술,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기로 제안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자격이나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이력서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인 중복투입 제한)** ①설계사업자와 구현사업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대로 각자의 책임 하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현사업자는 설계사업자가 투입한 근로자를 구현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투입해서는 아니 되며, 중복 투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다.

③구현사업자는 계약기한 내에 용역수행 완료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사업자가 투입한 근로자를 구현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거쳐 투입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산출물의 납품)** 설계사업자는 입찰공고서(표준산출물)에 설계사업자의 과업으로 지정된 산출물은 의무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사업목적상 불필요하거나, 대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계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산출물의 품질, 설계 오류, 누락 등의 검증과 예산대비 과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구현사업자(대표회사), 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를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관리자(또는 감리자)나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협회, 전문기관 등에 설계산출물 과업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설계사업자에게 설계산출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검증 대행)** ①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설계산출물의 검증과 과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검증, 과업규모의 적성성 검토 대행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10조, 제13조를 준용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검증과 과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대행을 요청받은 때에는 검증결과를 10일 이내에 설계사업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설계사업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연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검증 신청 등)** ①설계사업자는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설계산출물(인쇄물 10부, CD 1장)을 첨부하여 설계검증(설계검증과 과업규모의 적정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제11조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설계검증 대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계검증 결과를 설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그 지연사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계검증)**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설계검증 계획을 통지하고 설계검증 접수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설계산출물의 품질, 설계 오류, 누락 등을 검증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합', 미비사항 등이 경미하여 7일 이내에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적합', 그 외에는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설계산출물 과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 예산대비 과도, 과소한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5인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제2항에 따라 설계검증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적합' 또는 '조건부적합'으로 3분의 2미만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2. 제3항에 따라 과업규모의 적정성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적정', 과반수 미만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 각 호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 2>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설계사업자는 제4항 제1호에 따라 설계검증 결과 '조건부적합'을 통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설계산출물을 수정·보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미비사항의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 또는 '수정·보완'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 통지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해소하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설계검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설계사업자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업규모의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제품 규격, 소프트웨어 기능 또는 과업 등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설계사업자와 계약담당공무원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과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설계산출물의 검사)** ①설계사업자는 계약담당공무원(또는 조달청장)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적합'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인쇄물 10부, CD 3장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사업자와 구현사업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현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받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계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④설계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구현사업자에게 설계서 인계, 교육일정을 통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사업자가 구현사업자에게 설계서 인계, 교육을 실시한 후 구현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계·교육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설계서의 인수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사업자의 협력)** 설계사업자는 설계서 검사완료 후라도 구현사업자가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사업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현금(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설계사업자와 구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상호 협의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사업자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추진 일정계획을 경과하여 설계서를 납품한 경우에는 설계사업자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설계사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현사업자가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여부에 따라 제3항의 유보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즉시 설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방법

(인출제한 또는 인출확인)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설계우선 방식으로 발주한 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 구성원별 지분율 및 계약금액 합의서

□ 사업명 :

□ 계약금액 :

위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기명 날인한다. 단, 용역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할 지체상금을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자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입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

| 사업별 | 계약자 | 지분율 | 계약금액(원) | 납품기한 |
|---|---|---|---|---|
| 분석·설계 사업 | | | | |
| | | | | |
| | 소계 | 100% | | |
| 구현사업 | | | | |
| | | | | |
| | 소계 | 100% | | |

대표사 : ○○○(주) 대표 ○○○ (인)

구성원 : ○○○(주) 대표 ○○○ (인)

구성원 : ○○○(주) 대표 ○○○ (인)

<서식 2>

# 설계검증 결과 통지서

본 위원회의 설계산출물의 설계 검증과 과업규모의 적정성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1. 설계산출물의 설계검증

| 사업명 | 설계검증 결과 |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
|---|---|---|
|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중 선택 | * 조건부적합, 부적합일 경우 |

* 설계검증 결과 '조건부적합'의 경우에는 '수정·보완해야할 사항'을 7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적합'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적합'으로 인정됨

## 2. 과업규모의 적정성

| 사업명 | 검토 결과 | 비고 |
|---|---|---|
| | 적정 또는 부적정 | * 부적정 사유 또는 규모 등을 기재 |

**설계검증위원회 위원장 ○○○ (인)**